

## Q & A

다음은 지난 '95년 12월 노동부에서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시를 취합하여 묶은 질의회시집 중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와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 ① 적용 및 계상

#### 4천만원 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

**Q**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재료비 포함)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계상 지급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관련 고시 제6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원가계산시와 계약시의 총공사금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행중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4천만원이상으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낙찰가 결정 시 낮은 낙찰율로 계약금액이 4천만원미만이 되었을 때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함.

– 사유 : 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액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비용을 제외시켜야 함.

〈을설〉 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시켜야 함.

– 사유 : 안전관리비는 원가계산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저가낙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4천만원미만이 되더라도 동비용을 포함시켜야 함.

(2) 기 이행중인 계약에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감하게 될 때 그 시점(설계변경 승인일 또는 물가변동 기준일, 이하 같음)이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 또는 제외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다면,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부터 계상토록 되어 있음. 관련 “나”호 참조)

〈갑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함

–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동비용을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함.

〈을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계상 또는 제외조정이 필요없음.

– 사유 : 기 이행중인 계약이 특별한 약정없이

일반적으로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되었을 시 동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없음.

- A**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91. 9. 27)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그 계상을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2) 건설공사가 그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동 계약금액의 증감시는 그 사유발생 시를 기준으로 그 계상액을 증감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안 32169-2, '93. 1. 14)

## ② 사용

###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Q**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 신축공사의 시공부분만을 도급계약하여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공인 안전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도급내역중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중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는지?

<답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부고시 제91-39호('91. 7. 4)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의 별표 2에 예시된 사업장의 안전점검 사항에 구조안

전진단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당연히 도급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율설>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은 당초 설계시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제반 검토사항이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거 확인될 사항으로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시공부분만을 도급받아 시공중에 구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별도비용으로 행하여야 타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고시 별표 2-1-다에 기록된 안전점검은 기본비용에 예시된 것으로 이 기본 비용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조안전진단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에는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계상되지 않음

**A**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 32169-586, '92. 11. 5)

###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Q & A

**Q** 대통령령 제14093호로 '93. 12. 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

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하여

- 본 내용에는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개정전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비용을 추가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기존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할 경우는 법개정전 계약사항이므로 시공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안전점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 참고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 별표 2, 주) 1 참조

**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Q** 공사현장의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방화설비로서 소화기 및 방화사 등 소화용장비의 구입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301, '94. 11. 28)

**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Q** 도급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업체에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금액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 원도급 업체로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증진을 목적으로 적정기간 정기적으로 우수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우수 근로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에서 포상비(포상품)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A**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제1항 별표 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 하도급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639, '95. 11. 22)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Q** 기존도로의 개량공사에 있어 교통규제를 목적으로 고용된 보통인부, 공사현장의 인근에 도로교차점 건널목이 있어 여기에 고용된 교통정리원, 기존도로 및 철도개량공사에 있어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작업하기 위하여

고용된 안전감시인 등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2조의 “기본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계상비용”으로서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A**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기본비용”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 “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 이외의 각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므로

- 도로의 개량공사·포장공사의 교통정리인, 현도로 및 철도개량공사에 있어서 고용된 안전감시인 등 교통정리요원의 인건비는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별도계상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설계서상에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표준 품셈에 의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교통정리 요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발주시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고 표준품셈에 의하여 계상된 교통정리요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에서 2중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사료됨.

(건안 68307-80, '94. 4. 19)

### ③ 정 산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Q** 토목공사(공사기간 : '90. 12~' 95. 5)에 연계하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추가 수주(공사기간 : '94. 7~' 95. 8)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사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정기준)하였으므로

- 후속 발주된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중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

- 한편, 빌주자는 공사진행중에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사종료후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94. 10. 20 이전에 발주된 공사라면)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278, '94. 10. 29)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 Q & A

**Q**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매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각 항목별로 초과된 부분은 감액 실시되고 있는 바

- 연차공사로서 안전관리비를 매년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준공시 정산해야 하는지

**A** 정산시기에 대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07-485, '94. 12. 19)

### ④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방법

####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여부

-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노동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1.~12. 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 이 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

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건안 68307-195, '94. 7. 29)

- 건설업체의 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고시 제95-4호) 제4조제3항 참조

####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납기일전에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보험가입인정승인규정(예규)에 의거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가 산재가입 단위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 이러한 하수급자 소속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하수급자 산재가입번호로 요양 신청되었을 경우 재해율 계산에 있어 이 재해는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로 계산되는지?

**A**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산정됨.

(건안 68307-287, '94. 11. 8)

#### 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Q** 상기의 장소에서 ○○기업(주)이 하도급을 준 ○○토건 일용근로자가 '94. 5. 16일부터 사망전인 7. 5일까지 형틀목공 토목부분 구조물 작업을 하던중 7월 6일 06:20분경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시작전 담배를 피우고 휴식후 일어서는 순간 어지럽다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재해임.

- 사인은 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인 울혈성 심부전이거나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재발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함. 이러한 재해가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A** 노동부에서는 매년 조사 발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일명 P.Q제) 적용 등을 위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지난 1년간 전국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같은 기간의 총공사 기성 실적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고 있는바

- 이 때에 사망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가중치 (94년의 경우 사망 : 부상 = 1: 15)가 부여되는 한편, 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 부여를 제외시키고 있음.

(건안 68307-236, '94. 9. 24)

☞ 건설업체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 규정(고시 제95-4호) 제7조 및 제8조 참조

####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Q** 건설현장에서 공사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된 경우 재해율 분석시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A**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함

(건안 68307-161, '94. 6. 23)

####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Q** 노동부고시 제95-4호(건설업체의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 '95. 2. 18 개정)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 제6항에 의거

- 당사가 시공중인 지하철 5·9공구 현장에서 '94. 7. 13일 발생한 터널방수공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사업무의 무과실 판명되었으므로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지?

**A**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고시 제95-4호 제7조 참조)

- 위와 같은 무과실사고 여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임(동 고시 제8조 참조).

(건안 68322-194, '95. 4. 21)

####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Q** 자체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이며 전문 건설업체에 부분적으로 원도급을 줌)

- 원도급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전

## Q & A

문건설업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그에 따른 재해통계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산입되는 것이 아닌지?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A**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춰보건대 이 때의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의무이행대상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렇다면 이런 질의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동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임.
- ☞ 참고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일부공사가 (원)도급인지,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이행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또한 산업체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 이같은 보험관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님(별개의 차원임)

- 아울러 발주공사를 자체시공할 경우, 이 때 시공자는 건설법상 소정의 자격 및 지위(면허소지 등)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시공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자체 발주공사(즉, 발주자겸 시공자)라 하여(다른 시공자에 비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임.

(법무 68307-417, '94. 6. 20)

###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중 “제조업의 출장작업” 범주에 속하는(예 : 승강기설치 하도급공사, 보일러설치 하도급공사 등) 제조업체 소속의 출장근로자 업무상재해의 경우 재해율계산에 있어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율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A**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조업의 출장작업” 도중 발생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건안 68307-287, '94. 11. 8)

안전의식 선진화로 안전문화 정착한다  
조심하면 기쁨두배 방심하면 혼심두배